

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
(김종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31.

발의자 : 김종희 · 이용주 · 최경환(평)
황주홍 · 유성엽 · 이찬열
조배숙 · 장병완 · 김수민
정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 법은 서귀읍을 설치하기 위하여 1956년에 제정되었으나, 「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」에 따라 종전의 서귀읍과 중문면 일원을 통합한 서귀포시가 신설되어 동 읍이 폐지됨으로써 이 법률은 이미 실효(失效)된 상태임.

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.

법률 제 호

西歸邑設置에 關한 法律 폐지 법률안

西歸邑設置에 關한 法律은 폐지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